

#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6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0. 31.

발의자 : 송갑석 · 신경민 · 이인영

홍익표 · 박광온 · 인재근

이훈 · 안민석 · 윤관석

설훈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 그러나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 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항 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9조(별 칙) ①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1천</u> <u>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9조(별 칙) ① ----- ----- -----<u>2천</u> <u>만원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